

名義信託에 관한 研究

高 炯 錫* · 申 鍾 澈**

A Study on the "Nominal Trust"

Ko, Hyung-Suk* · Shin, Jong-Cheol**

ABSTRACT

Nominal Trust is that, in case of credit construction on trust, the trustor transfers nominal name of real-estate of his substantial property right to a trustee though selling or in some other ways without any real transaction, in the intern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e trustor retains the ownership of the entrusted real estate and maintains or avails the property.

On the basis of the action of trust, Nominal Trust has been accepted by judicial precedent. However, there are theories that Nominal Trust should be forbidden and rendered illegal. These theories are based upon the opinions that Nominal Trust is regarded as false expression and against real-estate law system. Besides, In the provision of positive law, while Art. 7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special Act. 1990 has provided legal basis for Nominal Trust, Art. 4 of the Real Name Registration Act. 1995 stipulated Nominal Trust as invalid on legal. But by reason that Nominal Trust belongs to category of action of Trus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false expression, and moreover. Because Nominal Trust was already established as Customary Law. it is not against real-estate law system. Therefore, Nominal Trust is a valid legal ac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전공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교수

I. 序論

名義信託은 日帝下 土地나 林野의 査定과 관련하여 형성된 概念으로, 査定 當時에는 宗中の 名義로 土地나 林野의 所有權을 登記할 方法이 없었기 때문에 宗中財産의 所有權을 登記하는데 있어서 이용되었다. 朝鮮 高等法院은 이러한 法律關係에 대하여 信託行爲理論을 적용하여 有效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후에 大法院의 判例에까지 이어져 名義信託이라는 理論을 형성하게 되었다.

判例에 의하면 '名義信託이란 當事者의 信託에 관한 債權契約에 의하여 信託者가 實質的으로는 그의 所有에 속하는 不動産 登記名義를 실제적인 去來關係가 없는 受託者에게 賣買 등의 形式으로 移轉하여 두는 것으로 對內的 關係에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保有하고 이를 管理·收益하면서 단지 公簿上의 所有 名義만을 受託者로 하여 두는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이와 같은 名義信託制度는 信託行爲理論의 擴大適用한 結果로 우리 大法院이 인정한 것이므로 日本이나 獨逸에는 없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制度이다.

本 論文에서는 判例에 의하여 형성된 名義信託理論의 本質에 관하여 먼저 糾明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名義信託理論에 대한 有效性 與否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不動産 名義信託에 관한 實定法의 私法的 效力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實定法이 가지는 問題點을 도출함과 동시에 그 補完策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 1세기 동안 축적된 判例을 살펴보면서 判例理論이 가지는 問題點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補完策의 提示를 研究의 目的으로 한다.

II. 名義信託의 意義

名義信託이란 對內的 關係에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보유하여 이를 管理·收益하면서, 公簿上의 所有 名義만을 受託者로 하여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名義信託은 名義信託契約에 의하여 公簿上으로만 受託者의 所有로 登記 또는 登錄을 하여 두고 실질적으로는 信託者가 所有權을 행사하는 法律關係를 말한다.

III. 名義信託의 本質

1. 獨逸의 信託行爲理論

信託行爲에 관한 理論은 그 동안 判決을 통하여 누적된 4개의 특정한 事案, 즉 讓

渡擔保·擔保目的의 債權讓渡·推尋目的의 通常의 背書·擔保(保管)어음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1875년경에 이르러 나오게 되었다.

위 4가지 사안은 모두 權利의 讓渡에 관한 것인데, 信託行爲理論의 초창기에는 그것이 虛偽表示가 아닌지 與否가 爭點이 되었다. 즉, 讓渡擔保나 擔保目的의 債權讓渡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제로는 擔保의 目的이라는 점이, 推尋目的의 通常의 背書에 있어서는 그것이 債權推尋의 委任이라는 점이, 또 擔保目的의 어음의 保管에 있어서는 그것이 擔保의 目的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위의 事實을 다룬 判例는 일관하여 虛偽表示의 成立을 否定하였다.

2. 名義信託의 本質

가. 名義信託은 信託行爲인가?

判例는 宗中이 그 所有의 不動產을 宗中員에게 信託하여 登記簿上 그 宗中員의 名義로 所有權의 登記를 經유하였을 때에는 이 宗中과 受託者인 宗中員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信託行爲의 法理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學說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名義信託을 信託行爲의 範疇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즉, 첫째는 信託行爲는 讓渡擔保와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를 설명하기 위하여 援用된 것이므로 名義信託은 본래의 信託行爲의 適用 對象을 벗어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名義信託은 受託者에게 名義만을 移轉할 뿐, 적극적으로 目的物에 대해 使用·處分의 權限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전히 信託者가 갖는다는 점에서 受託者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 信託行爲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名義信託을 信託行爲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效果도 달리 구성한다. 名義信託을 信託行爲로 보는 判例는 對外關係에서 受託者를 완전한 所有者로 평가하고, 그 결과 受託者로부터 不動產을 讓受한 第3者는 원칙적으로 善意·惡意를 묻지 않고 適法하게 所有權을 취득하는 것으로 理論構成을 한다. 이에 대해 名義信託을 信託行爲로 보지 않는 대부분의 學說은 名義信託을 虛偽表示에 문의하거나 또는 虛偽表示에 관한 規定을 類推適用하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 결과 受託者로부터 不動產을 讓受한 第3者는 그가 善意인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 것으로 理論構成을 한다.

이렇듯 名義信託에 대한 法的 效果의 問題는 信託行爲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判例는 名義信託을 信託行爲로 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대부분의 學說은 名義信託이 信託行爲 固有의 範疇와 그 實質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名義信託의 本質

信託行爲의 一般概念은 일정한 目的을 위해 權利移轉의 形式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一般概念은 名義信託에도 그대로 공통된다. 특히 名義信託의 發端을 제공한 것, 즉 關係規定의 未備에 따라 부득히 발생하게 된 宗中財産의 名義信託은 우리 사정에 特有한 事案이고 이에 관해서는 信託行爲로서의 一般概念이 적절히 동원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 實定法上的 根據도 있었다. 즉, 이번 不動産實名法에 의해 삭제된 종래의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7條 2項에 의하면 租稅賦課 등을 면할 目的이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名義信託登記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것의 그 理論上 基礎는 信託行爲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名義信託理論 역시 法律行爲로서의 信託行爲로 파악하는 것이 그 本質에 부합하는 것이다.

IV. 名義信託의 有效性 與否

1. 名義信託의 有效性에 관한 判例 및 學說

가. 判例의 見解

判例는 名義信託이 虛僞表示가 아니고 有效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그 根據를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지 않다.

나. 諸學說의 檢討

(ㄱ) 無效說

擔保信託이나 管理信託은 名義信託과 같게 다를 수 없는 면이 있으므로 擔保信託이나 管理信託은 虛僞表示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名義信託은 虛僞表示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有力說을 支持하는 學說도 역시 名義信託을 虛僞表示로 보는 見解와 物權法定主義 違反와 相對的 所有權理論의 矛盾點을 주장하는 見解가 있다.

(ㄴ) 制限的 有效說

(a) 表見所有權論

이 見解 역시 判例의 立場에는 否定的인 면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名義信託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第3者와의 關係라는 點에 중점하여 民法의 全領域에서 惡意의 第3者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善意의 第3者의 保護에 그 理論의 중심을 두고

表見法理를 적용하여 善意의 第三者의 保護를 꾀하고 있다.

(b) 受動信託理論

이 見解 역시 名義信託이 信託行爲의 範疇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즉, 判例의 相對的 所有權論과 惡意의 第三者 保護에 관하여 비판하면서 英美의 受動信託論을 주장한다. 따라서 名義信託設定契約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當該不動産에 所有權은 여전히 信託者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c) 有效說

(a) 相對的 權利移轉說

이 見解는 判例의 見解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見解이다. 즉, 當事者間의 名義信託에 관한 合意와 登記의 移轉으로 外部關係에 있어서 所有權은 受託者에게 있지만 内部關係에 있어서 所有權은 信託者에게 있게 되며, 이러한 名義信託設定契約은 信託行爲의 範疇에 포함되기 때문에 虛偽表示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 絶對的 權利移轉說

이 見解 역시 名義信託이 虛偽表示에 해당하지 않으나 所有權의 絶對性 내지 一物一權主義 때문에 所有權의 歸屬이 對內·外的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當事者間의 名義信託에 관한 合意와 登記의 移轉으로 인하여 當該不動産의 所有權은 당연히 受託者에게 移轉하고 信託者는 當該不動産에 대하여 債權的 權利만을 受託者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3. 小 結

먼저 無效說이 주장하는 根據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名義信託은 虛偽表示이며, 物權法定主義(民法 第185條)에 違反된다는 것이다.

첫째, 虛偽表示 該當與否에 관하여는 名義信託에 있어서 公簿上的 名義만을 移轉하고 管理·處分の 權限을 信託者에게 남겨둔다는 것은 일응 虛偽表示와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無效說이 虛偽表示을 주장하는 그 基礎는 擔保信託과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는 信託行爲의 範疇에 속하는 것이므로 有效하지만 名義信託은 信託行爲의 範疇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虛偽表示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名義信託도 信託行爲의 範疇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虛偽表示에 該當 與否에 관하여는 絶對的 權利移轉說이 假裝行爲를 들어 설명한 바와 같이 當事者들의 合意는 通情虛偽表示에 該當하지 않으므로 名義信託은 虛偽表示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物權法定主義에서 法의 意味는 단순히 成文法만을 의미하지 않고 慣習法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럼 名義信託이 民法 第185條에서 말하는 慣習法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慣習法이 成文法과의 關係에서 어떠한 效力을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慣習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事案에 대하여 慣行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慣行이 반복되어야 하며 法的 確信을 얻어야 한다. 즉, 土地調査令 또는 林野調査令이 施行될 당시에는 宗中 또는 權利能力없는 財團 또는 社團의 登記能力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宗中員 중 1人 또는 數人의 名義로 査定을 받았으며, 1930년 同法の 改正으로 宗中 또는 權利能力없는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能力이 인정되었다고 하지만 宗中 名義로 登記를 경료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宗中員의 1人 또는 數人의 名義로 登記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즉, 宗中の 不動産에 관하여 登記를 함에 있어 宗中員의 1人 또는 數人의 名義로 登記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慣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慣行은 解放以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은 判例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이러한 慣行이 法的 確信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名義信託에 관하여 이미 法院의 判例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法的 確信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名義信託은 慣習法으로 이미 확립되어 우리의 法文化 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慣習法과 成文法의 效力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

民法 第185條에서는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의하는 외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成文法에 대한 慣習法의 效力이 문제가 된다. 이에 學說은 慣習法의 補充的 效力을 주장하는 見解와 對等的 效力을 주장하는 見解 및 改廢的 效力을 주장하는 見解으로 나뉘어 첨예한 對立의 樣相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成文法에 배치되는 慣習法의 效力이 인정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慣習法은 成文法에 補充的 效力을 갖는 것이 아니라 成文法과 對等的 效力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名義信託 역시 이미 慣習法으로 확립된 이상 慣習法에 의한 物權의 創設은 民法 第185條에서 말하는 物權法定主義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制限的 有效說은 名義信託에 대하여 原則적으로 否定하지만 去來의 安全(善意의 第三者의 保護)을 위하여 表見代理制度를 類推適用하자는 것과 信託者에게 對內外的 所有權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見解는 名義信託理論에 타당하지 않다. 즉, 受託者로부터 당해 不動産을 讓受한 第三者가 善意이면 有效하고 惡意이면 無效라는 것은 우리의 民法 體系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우리 民法은 不動産 登記簿에 公信力을 附與하지 않음으로서 去來의 安全보다는 實權利者의 保護에 치중하고 있지만 不可避한 경우에 한해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例外的인 條項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善意의 第三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類推適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名義

信託에 있어서 第3者の 保護는 무시될 것이기? 전혀 그러하지 않다. 즉, 名義信託에 있어서 對外關係에 있어 受託者의 權利는 完全한 權利이므로 이로부터 權利를 讓受한 第3者는 진정한 權利者에게서 權利를 讓受한 것이기 때문에 適法하게 權利를 취득할 뿐이지 讓受人의 善意·惡意에 따라 權利를 取得하느냐 權利를 취득하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學說들은 우리 民法의 全般에 있어서 惡意의 第3者가 보호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한 경우의 第3者와 名義信託에 있어서의 第3者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詐欺 또는 強迫, 錯誤, 契約의 解止·解除 등의 경우에는 賣渡人이 진정한 權利者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去來의 安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善意의 第3者에 限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名義信託에 있어서 賣渡人은 外部關係에 있어서 진정한 權利者이기 때문에 權利 取得에 있어서 아무런 瑕疵가 없다.

絶對的 權利說에 의하면 受託者는 對內外的으로 所有權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이는 私的自治에 違背되는 경우이다. 法律行爲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當事者의 意思表示이다. 名義信託設定契約에 있어서 信託者가 受託者에게 對內外的 關係에서 모든 權利를 移轉하지 않고 단순히 外部的 關係에서의 所有權만을 移轉하는 데에 따른 合意를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合意가 強行法規에 違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受託者에게로 絶對的으로 權利가 移轉한다고 하는 것은 當事者의 意思를 看過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名義信託이 無效說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經濟的 效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宗中 및 權利能力없는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能力이 인정되어 不動産을 당해 宗中의 名義로 登記하였다고 할 때, 그 不動産의 所有關係는 總有이다. 따라서 宗中이 不動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宗中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야 하는데, 宗中總會의 開催의 곤란함과 意思決定의 複雜性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宗中員의 一人 또는 數人의 名義로 登記한 경우에 그 讓受·讓渡가 매우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名義信託은 虛偽表示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民法의 物權法定主義에도 違反되지 않는 有效한 法律行爲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V.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1. 成立

일반적으로 名義信託은 信託者와 受託者間 名義信託關係의 設定에 관한 合意가 성립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當事者間의 合意없이 名義信託關係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러한 名義信託의 類型 중에서 中間省略名義信託(3者間の 名義信託)은 中間省略登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有效性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對內的 關係

名義信託의 對內的 關係에서 當該不動産의 所有權은 信託者에게 있다. 따라서 當該不動産의 登記名義가 受託者 앞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受託者는 信託者에 대하여 所有權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受託者의 占有는 他主占有이기 때문에 당연히 取得時效를 주장하여 所有權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受託者가 數人인 경우에는 그 特約이 없는 한 數人의 受託者들의 所有關係는 共有關係이다.

3. 對外的 關係

名義信託의 對外的인 關係에 있어서 所有者는 登記名義人인 受託者이다. 따라서 當該不動産을 不法占有하거나 毀損하는 경우에 있어서 信託者는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當該不動産을 직접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占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이나 受託者의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을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受託者는 對外的 關係에서 所有者이기 때문에 當該不動産을 賣却한 경우에 買受人의 善意, 惡意에 관계없이 買受人은 適法하게 所有權 또는 權利를 취득하게 된다.

4. 名義信託關係의 解消

名義信託에 의하여 當事者 사이에 성립하는 名義信託의 法律關係는 이른바 繼續的 債權關係이다. 따라서 名義信託의 法律關係는 원칙적으로 信託者와 受託者 사이의 解止의 意思表示로 解消된다. 보통의 名義信託은 當事者 사이에 그 存續期間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名義信託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信託者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信託契約을 解止하고 受託者에 대하여 信託財産의 返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解止의 意思表示는 있었지만 아직 登記의 移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當該不動産을 第3者가 取得한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判例와 學說은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內部關係에 있어서 所有權은 信託者에게 있으므로 移轉登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信託者의 所有이지만 第3者와의 關係에서는 解除의 경우와 같이 善意의 第3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經了한 善意의 第3者에게 信託者는 權利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日帝下 宗中所有의 不動産을 登記하기 위한 方法으로 朝鮮高等法院判決에서부터 인정된 不動産 名義信託은 그 후 大法院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適用範圍를 不動産 뿐만 아니라 制限物權, 기타의 財産權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理論에 대하여 學說은 支持하는 見解와 反對하는 見解로 양분하여 대립하여 왔으며, 그 理論的 對立의 始發點은 名義信託이 과연 判例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信託行爲의 範疇에 포함되는가, 즉 名義信託의 本質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名義信託 역시 讓渡擔保, 推尋을 위한 債權讓渡와 마찬가지로 信託行爲의 一種이고, 우리나라의 특유한 時代的 背景下에서 발생하였음을 이미 앞에서 보았다.

또한 名義信託 兩當事者의 合意, 즉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信託者가, 外部關係에 있어서는 受託者가 所有權을 保有하기로 하는 意思의 合致에 의한 物權變動이기 때문에 無效說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通情虛偽表示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名義信託은 慣習法의 成立要件을 충족하였기에 이미 慣習法이 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民法 第185條의 物權法定主義에 전혀 違背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分野는 受託者가 受託不動産을 惡意의 第3者에게 讓渡한 경우에 惡意의 第3者의 保護 問題인데, 우리 民法은 登記에 公信力을 附與하지 않으므로써 去來의 安全보다는 相對的으로 實權利者의 保護에 주력하고 있으며, 例外的인 경우에 한하여 法律의 規定을 통하여 善意의 第3者를 保護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學說들은 이러한 民法의 態度에 비추어서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역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不當하다. 즉, 民法에 있어 善意者 保護 規定은 無權利者인 讓渡人에게 權利를 讓受한 경우이지만, 名義信託의 경우에는 受託者는 無權利者가 아니다. 名義信託의 權利歸屬關係에 있어서 對內關係에 있어서 信託者가 權利者이지만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受託者가 所有者이므로 이러한 完全한 所有者인 受託者에게 權利를 讓受한 第3者는 善·惡을 불문하고 權利를 取得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名義信託에 관하여 直接的으로 規定한 實定法이 1990년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이란 명칭으로 制定되었으며 同法은 다시 1995년 不動産實名法으로 대체 되었으나 이 법은 改革立法의 성격이 다분하여 名義信託에 관한 모든 問題를 단순히 法律의 規定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점에서 크나큰 問題點이 있으며, 細部的으로는 名義信託을 本質的으로 無效로 하는 점을 根幹으로 하고 있으므로 不動産實名法은 不動産登記特別法 第7條의 規定과 같이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理論 역시 그 理論的 出發點에 관하여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同 理論에 대한 論爭을 종식하기 위하여도 그 本質에 관하여 정확한 糾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當事者의 便宜를 위한 경우나 租稅回避 또는 法律의 規定을 回避하기 위한 경우의 名義信託은 法律上 保護할 利益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有效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名義信託理論에 대하여 먼저 學說들의 見解에 대하여 整理하였으며, 또한 判例理論을 體系化하는 過程에서 判例에 의하여 定立된 理論의 問題點을 提示하였고, 名義信託이라는 制度를 健全하고 確固한 法的 制度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미흡하나마 改善策도 提示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名義信託理論은 완벽한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하여 去來의 現實을 직시하며 名義信託理論이 살아 있는 法으로써 우리의 去來生活을 規律하고 公平, 妥當한 解決策이 될 수 있도록 學界에서의 보다 많은 論議와 實務界에서도 좀 더 타당한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여 名義信託理論의 틈을 꾸준히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